

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

1. 개정이유

- ☐ 과다호가부담금 부과 기준을 완화하여 투자자의 거래부담을 경감시키고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☐ 과다호가부담금 부과* 기준 완화 (제164조의3)

* 부과대상 : 당일 정규거래, 각 계좌의 코스피200선물별·코스피200옵션별 적용

- 총호가건수 기준을 10만건 이상인 경우로 단일화하고, ‘총호가건수/총약정수량’ 기준을 10에서 15로 완화
 - ‘총호가건수/총약정수량’ 기준이 15로 완화됨에 따라 과다호가부담금 면제(월 2회) 제외 기준도 50에서 75로 완화(부과기준의 5배 수준)

< 과다호가부담금 부과 기준 >

구분	현행		개선	
	총호가건수	총호가건수/ 총약정수량	총호가건수	총호가건수/ 총약정수량
1	2만건 ~ 10만건	20 이상	10만건 이상	15 이상
2	10만건 이상	10 이상		

3. 참고사항

- ☐ 심사등 : 기획관리부 심사완료(심사연번호 : 제15-46호)
- ☐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